

판례로 본 건설분쟁

자료제공 『알기쉬운건설분쟁사례해설집』 건설경제신문사

도급인의 채무인수

쟁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면하는가?
판단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실제 변제할 때까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도 존속한다.

[변존적 채무인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이나 기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여주기로 하는 약정은 도급인에 의한 채무인수인 경우가 많다.

채무인수에는 구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의 채무가 신채무자의 채무와 병존하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2다36228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병존적 채

무인수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판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정산합의의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 포기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다만, 도급인이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단 정산합의의 시점부터 권리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다61435 판결)

노임에 대한 압류는 무효

쟁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노임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임이 압류되었다. 이 압류는 유효한가?
판단	그 압류는 실제법상의 효력이 발생시키지 않는 무효이다.

[노임에 대한 압류는 무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즉,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또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노임 상당액에 대하여까지 강제집행 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건설법에서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임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압류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압류금지된 채권인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것이 압류가 금지된 것이라면 그 압류신청을 각하해야 하지만,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압류명령을 내기 때문에 결국 압류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조사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했다더라도 건설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부분에 관한 한 그 압류 또는 가압류는 무효이다. 다만, 이 무효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의미에서의 무효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가압류나 압류의 단계에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노임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재판이 확정되어 더 이상 집행절차에서는 다룰 수 없게 된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그것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절차를 종료시

키는 효과를 갖게 되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는 그 효력을 다룰 수 없다.”(대법원 86다카1688 판결) 그렇다고 무효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노임 부분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21048 판결)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